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90
----------	-------

발의연월일 : 2025. 8. 21.

발 의 자 : 이훈기 · 조계원 · 최민희
박지원 · 이재관 · 김 윤
전현희 · 문대림 · 박선원
이상식 · 최혁진 · 오세희
김현정 · 조인철 · 황정아
송재봉 · 이광희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인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 사회 참여 지원 등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가 늘어나면서 디지털 취약계층이 범죄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어 디지털취약계층이 지능정보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4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672호 디지털포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제3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안전한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672호 디지털포용법 제8조(디지털포용 기본계획) ① · ② (생 략)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5. ~ 15. (생 략) ④ · ⑤ (생 략) <u><신 설></u>	법률 제20672호 디지털포용법 제8조(디지털포용 기본계획)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 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u> 5. ~ 15.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u>제18조의2(디지털취약계층에 대 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 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안전한 지능 정보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디 지탈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사 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의 내</u>

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
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